

현안리포트 05-021

WTO체제 10년의 성과와 전망

2005. 6

통상전략팀

<목 차>

I. WTO 10년 역사	1
II. 주요 이슈별 성과	9
1. 관세인하	9
2. 농산물시장 개방	14
3. 섬유교역자유화	17
4. 비관세장벽 해소	20
5. 서비스시장 개방	23
6. 개도국 참여 확대	25
III. 우리나라의 WTO 체제	28
IV. 전망	32

*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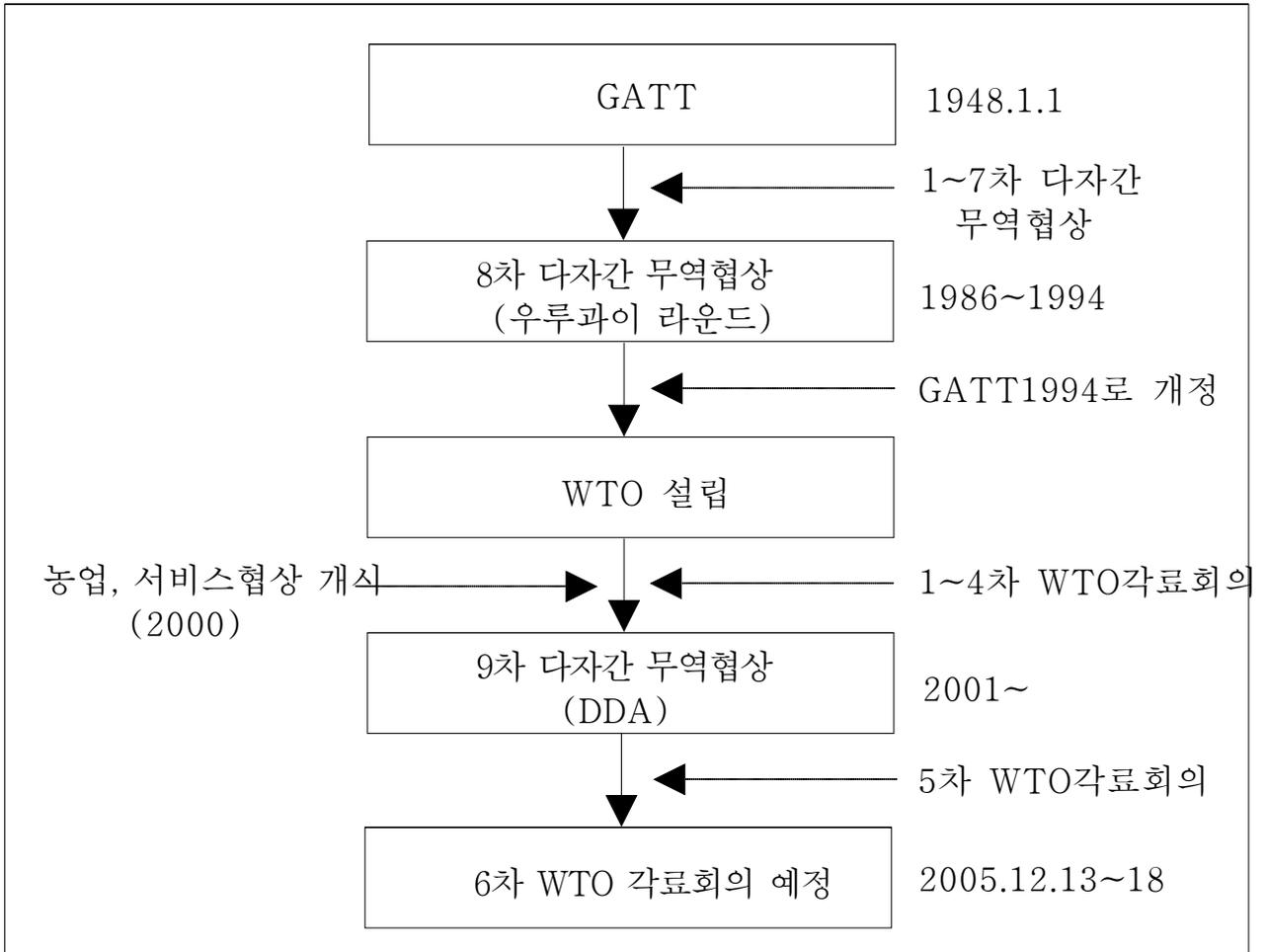
I. WTO 10년 약사

- 1995.1.1일부로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는 교역자유화를 위한 “다자간 무역체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음.
- WTO의 전신인 GATT는 범조항만 존재했던 것에 비해 WTO는 GATT를 기본으로 한 무역규범을 관장하며, 분쟁해결 시스템을 자체 보유한 법인성격을 갖추.
- 특히 기존 GATT체제가 상품교역만을 관장해 왔던 반면, WTO는 서비스교역과 교역에 따른 지적재산권 문제를 동시에 다룸으로써 명실공히 세계 교역의 실질적인 조정자 역할을 수행
- WTO의 기본원칙
 - 비차별(non-discrimination, MFN대우), 상호주의(reciprocity)

<표 1> WTO 10년 약사

1948.1.1	GATT 발효
1960~1961	딜론 라운드 (5차 다자간 무역협상)
1964~1967	캐네디 라운드 (6차 다자간 무역협상)
1973~1979	동경 라운드 (7차 다자간 무역협상)
1986~1994	우루과이 라운드 (8차 다자간 무역협상)
1995.1.1	WTO 출범
1996.12	1차 각료회의 개최 (싱가폴) : 뉴라운드 협상 개시
1998.5	2차 각료회의 개최 (제네바) : 전자상거래에 대한 무역규범 논의 시작
1999.11	3차 각료회의 개최 (시애틀, 미국) : 개도국 참여 확대 논의 본격화
2001.11	4차 각료회의 개최 (도하, 카타르) : 도하개발아젠다(DDA) 출범 (9차 다자간 무역협상)
2003.9	5차 각료회의 개최 (칸쿤, 멕시코) : 협상 타결에 대한 기본적 합의 마련 (싱가폴 이슈 등)
2005.12	6차 각료회의 개최 예정 (홍콩) : 2006.1.1일 협상타결 시한 재확인 예정

<그림 1> WTO 체제 출범 과정



□ WTO의 특징

- 농업, 섬유류 등 GATT체제 밖의 무역규범을 따르는 부분을 포괄
 - 농업은 농업협정, 섬유류는 MFA(다자간 섬유협정)에 의해 예외 없는 관세화를 원칙으로 하는 GATT 체제에서 벗어나 있음.
-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산업발달에 따른 신통상분야 포함
- 분쟁해결의 구체화 및 제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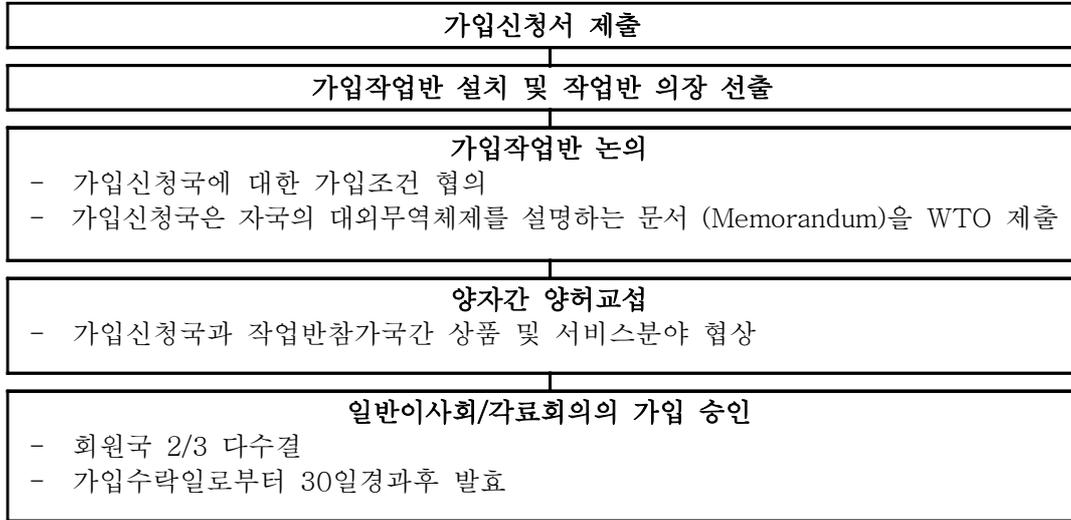
<표 2> GATT와 WTO의 비교

	GATT 체제	WTO 체제
성 격	○ 임시적이며 잠정적	○ 영구적
시장개방 노력	○ 관세인하에 주력 ○ 비관세장벽은 동경라운드 에서 철폐 노력 - 그러나 선언적인 규정정립 수준으로 실효성미흡	○ 관세 인하는 물론 특정분야에 대한 무관세 도입과 고관세율의 하향 평준화를 촉진 ○ 비관세 장벽의 철폐를 강화
관할범위	○ 상품 (주로 공산품)	○ 공산품 외에 농산물, 섬유류에 대해서도 포괄
신분야 협정	○ 없음	○ 서비스교역에 대한 협정 제정 ○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규범 제정 ○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대한 규범 도입
규범강화	○ 보조금 정의 등 불명료 ○ 반덤핑 조치의 남용 등 자의적 운용	○ 보조금 정의의 명료화 및 규율강화 (금지, 상계 가능, 허용보조금 등의 구분설정 등) ○ 반덤핑 조치의 발동기준 및 부과절차 명료화의 남용 방지 ○ 세이프가드협정, 원산지 규정, 선적전 검사협정 등의 내용을 구체화 ○ 분쟁해결 절차 강화

<표 3> WTO 개관

- 명 칭 : 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 설 립 : 1995.1.1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
- 회 원 국 : 148개국 (2005.6월 현재)
- 본 부 : 스위스 제네바
- 예 산 : 169백만 스위스 프랑
- 본부 직원 : 630명
- 사무총장 : 수파차이 파니치팍디 (태국 수상 출신)
- 목 적 : 무역자유화를 통한 전세계적인 경제발전
- 기 능
 - 다자간 무역협상 Forum 제공
 -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의 이행 감독
 - 무역 분쟁 해결

<그림 2> WTO 가입 절차



- WTO 출범 이후, 다자간 무역협상은 기설정의제(Built-In Agenda)와 뉴이슈(New Issues)로 구분되어 진행
 - 기설정의제 :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당시 협상 당사국간 합의가 어려워 추후 논의키로 한 의제로서 농업과 서비스가 해당
 - 뉴이슈 : 환경, 노동, 경쟁, 투자 등 무역왜곡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이슈들에 대한 논의가 새로이 전개

- 농업과 서비스는 '기설정의제'로서 2000년에 일제히 협상 개시
 - 농산물 교역에서의 예외 없는 관세화 원칙, 보조금 감축 등에 대한 의무이행 협상 진행 중
 - 선진국과 개도국 간 차별적인 관세인하 공식 적용여부, 관세화 유예 품목의 범위, 비교역적 관심사항(NTCs), 개도국 특별대우(S&D)에 대한 쟁점 대두

○ 서비스 협상은 각국의 양허안을 교환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 금융, 통신, 물류 등에서의 시장개방 수준이 쟁점사항

□ 환경,노동,경쟁,투자 등 신통상의제를 다루기 위한 '뉴라운드' 개시

○ 1996.12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1차 각료회의에서 무역과 환경, 무역과 노동 등 뉴 이슈에 대한 협상 개시 선언

○ 1999.11월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된 3차 각료회의는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른 빈부격차 심화 등에 격렬하게 항의하는 각국 NGO와 선진국 위주의 협상을 반대하는 개도국의 소극적 태도로 본격적인 뉴라운드 협상 개시에 실패

○ 2001.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4차 각료회의에서는 개도국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개도국 특별대우(S&D), Friends Group을 중심으로 하는 협상방식에 합의하고 도하개발아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이하 DDA) 협상 개시

- 동 협상은 7대의제(농업, 서비스, 비농산물, 규범, 환경, 지적재산권, 싱가포르이슈)별로 협상 진행 중

-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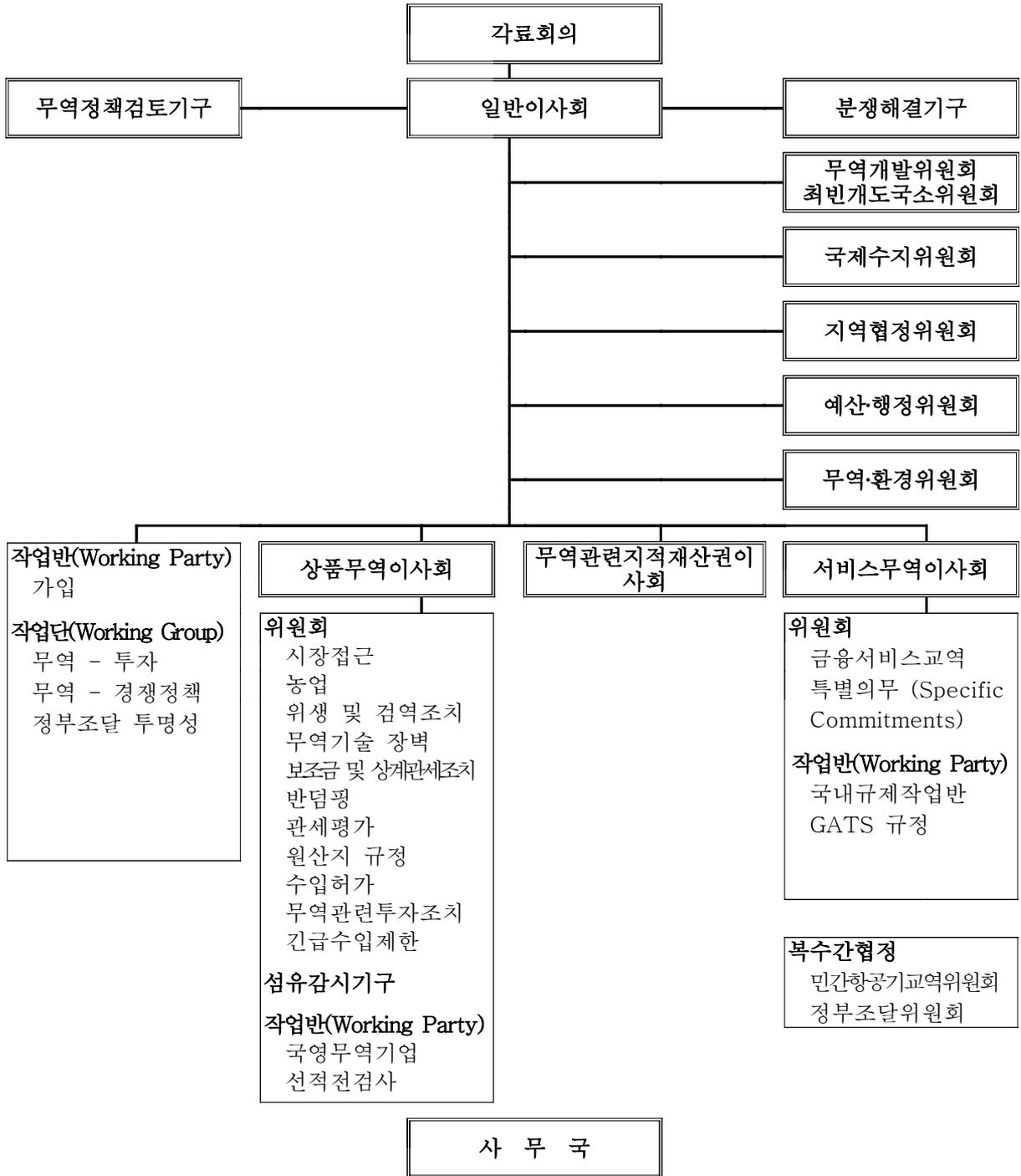
· 무역장벽 1/3 감축 시 세계경제가 6,100억불 추가성장 예상 (미시건大)

· 우리나라는 GDP 1~2% 추가 성장기대 (KIEP)

- 당초 협상타결 시한은 2005.1.1일이었으나, 2006.1.1일로 연장

- DDA 협상타결이 진척을 보이지 않자, 2004.7월 WTO 일반이사회 오시마 의장은 지금까지 회원국간 합의되거나 다수의 의견이 도출된 내용을 중심으로 협상의 틀(framework) 마련
→ “July Package”
- 농업 : 보조금이 많이 지급될수록, 관세가 높을수록 많은 삭감 및 인하 원칙, 구간대별 감축방식 사용
 - 선·개도국에 공히 공통 관세인하공식(tiered Formula) 적용
 - 관세인하협상의 기본은 양허관세
- 비농산물 : 비선형 공식적용 관세인하, 비관세장벽 제거노력 지속
- 개도국 우대 : 개도국 특별대우(S&D) 이행결과를 2005.5월까지 무역협상위원회 및 일반이사회에 보고, 2005.7월까지 일반이사회 검토 완료
- 서비스 : 양허안 제출 독려, 2005.5월까지 수정양허안 마련
- 규범, 환경, 지적재산권 : 현재의 협상 노력 지속
- 무역원활화 : 올 하반기까지 협상그룹 구성 및 의장 선출
 - 싱가포르이슈 중 투자, 경쟁, 정부조달 투명성 등은 협상에서 제외
- 협상시한 : 당초 2005.1.1일 시한을 차기 각료회의(2005.12월, 홍콩)까지 연장
- 폭넓은 관세인하 및 보조금 감축 등 농업 분야의 획기적 시장개방 의지 재확인, 서비스와 무역원활화 등 새로운 분야의 협상 개시 등을 알리는 계기

<그림 3> WTO 조직구조



<표 4> WTO 협정문의 구성

최종의정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1

부속서 1가 : 상품무역에 관한 다자간 협정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조제1항(b)의 해석에 관한 양해(과징금의 표기)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7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국영무역)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국제수지 규정에 관한 양해(국제수지 목적 조치)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4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관세동맹 등)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의무면제에 관한 양해(Waiver 존속기간 설정)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8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주요공급국 개념 확대)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양허안의 법적 효력 등)

농업에 관한 협정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무역관련투자조치에 관한 협정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반덤핑 및 상계관세)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관세평가)

선적전 검사에 관한 협정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수입허가 절차에 관한 협정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부속서 1나 :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부속서 1다 :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부속서 2 :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부속서 3 : 무역정책검토제도

부속서 4 : 복수국간 무역협정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국제 낙농 협정

국제 우육 협정

각료 결정 및 선언

II. 주요 이슈별 성과

1. 관세율 인하

□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공산품에 대한 수입관세는 현저히 낮아짐.

- 일부 공산품의 평균 수입관세는 4% 이하 수준
- 관세가 더 이상 교역장벽이 될 수 없다는 인식 확산

□ 수입 품목에 대해 영세율 적용 확대

- Quad(미국, EU, 일본, 캐나다) 국가의 경우, 수입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의 25~50%가 영세율
 - 전체 수입의 30~40% 차지
- 개도국¹⁾의 경우, 수입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의 0~5%가 영세율
 - 전체 수입의 30% 차지

□ 그러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관세인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의 관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무역왜곡 효과를 초래

- 선진국들의 첨두관세(tariff peaks) : 특정분야의 수입품에 대하여 평균관세율을 크게 상회하여 부과하는 높은 관세로 보통 15% 이상의 관세를 말함.

- 농산물, 섬유 및 의류 제품에 대해 주로 부과하며, 자국산업 보

1) 홍콩, 마카오, 중국, 싱가포르, 한국 제외

호의 의지가 매우 강한 분야임.

○ 경사관세(tariff escalation) : 상품의 가공정도가 높아질수록 관세가 높아지는 관세구조로서 원재료의 관세율을 무세 혹은 저세율로 하고 반제품, 완제품 등 가공도가 높아질수록 고관세율 부과

- 자원수입국의 가공산업을 보호하는 효과는 있으나, 자원수출국의 경우에는 공업발전을 저해

○ 관세할당(tariff quota) : 일정량에 대해서만 저관세율을 부과하고, 초과량에 대해서는 고관세율 부과

□ 공산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는 매우 큰 폭으로 이루어져 왔음.

○ 아래 <표 5>에서 보듯이 4대 주요 교역국(Quad; 미국, EU, 일본, 캐나다)은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직전인 1996년도의 평균 실행관세율에 비해, 2002년의 관세율이 낮아졌고, 특히 농산물의 관세율이 큰 폭으로 낮아졌음을 알 수 있음.

- 이들 국가는 공히 평균 양허관세율보다 낮은 수준의 평균 실행관세율을 운영

○ 이에 비해 개도국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실행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1996년에 비해 2002년도의 실행관세율은 상당폭 인하

- 그러나 평균 실행관세율이 양허관세율보다 높은 수준

<표 5> WTO 출범 이후 주요국 관세율 인하 현황

	선진국				개도국			
	미국	EU	일본	캐나다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공
평균 양허관세율	4.6	6.3	8.4	8.4	9.9	9.9	30.2	20.9
공산품	4.0	16.3	26.5	23.1	9.1	37.7	29.5	18.1
농산물	8.1	3.6	3.9	5.8	14.5	115.7	35.8	46.8
평균 실행관세율 (2002)	5.1	6.4	6.9	6.8	12.3	32.3	11.4	11.4
공산품	4.2	3.8	3.9	4.2	11.3	30.8	11.4	11.4
농산물	9.5	15.9	18.6	21.2	18.0	41.7	11.7	11.5
평균 실행관세율 (1996)	6.4	10.2	9.0	13.2	23.6	35.3	13.7	15.0
공산품	5.7	6.6	-	10.5	21.7	35.6	13.8	15.4
농산물	10.0	23.7	-	28.6	35.4	33.8	12.9	11.3

주 : 중국의 평균 양허관세율은 양허스케줄의 완전 이행 시 예상되는 관세율

자료원 : WTO

□ 개도국들이 전반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는 이유는 1) 수입품으로부터의 자국산업 보호, 2) 세수 유지 등으로 파악

□ WTO의 다자간 무역체제는 관세율 인하와 아울러 관세율 조화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음.

- 관세율 정책에 대한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저해 → 모든 품목의 관세율이 일관되고 조화된 구조로 적용될 수 있도록 다자간 논의가 전개

- 농산물, 섬유·의류에 부과되던 수량규제의 완화 및 철폐
→ 예외 없는 관세화 (GATT 복귀)

- 첩두관세, 경사관세, 관세할당 등 왜곡적인 관세구조의 제거

□ 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제도 : GSP

- 일부 선진국이 개도국 및 최빈 개도국들에 대해 제공하는 특혜관세로 개도국의 무역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도쿄라운드에서 제안
 - GSP 특혜관세는 공여국이 수혜국을 일방적으로 선정하며, 특혜관세율 또한 일방적으로 정함.
 - GSP 특혜관세는 일반 실행관세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
 - 그러나 소위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GSP 관세율도 일반 실행관세율, 즉 MFN세율에 근접하는 높은 세율이 책정

<표 6> 주요국 민감품목에 대한 MFN세율과 GSP세율 비교 (2002)

(단위 : %)

공여국 및 품목	MFN 관세율	GSP 관세율	LDC 관세율 ^{주)}
미국 평균	5.2	4.2	2.8
농산물	10.4	9.3	6.5
섬유·의류	9.7	9.4	9.4
EU 평균	6.4	4.5	1.7
농산물	16.1	14.5	9.0
섬유·의류	8.4	7.2	0.0
일본 평균	6.9	5.7	3.6
농산물	20.0	19.3	18.3
섬유·의류	7.0	5.4	0.1
캐나다 평균	6.8	5.4	4.1
농산물	21.7	20.8	18.2
섬유·의류	9.9	8.9	7.1
호주 평균	4.3	3.9	1.8
농산물	1.3	1.0	0.0
섬유·의류	12.3	12.3	8.6
뉴질랜드 평균	4.1	3.5	0.0
농산물	2.1	1.6	0.0
섬유·의류	9.5	9.0	0.0

주 : Least-developed Countries(최빈개도국)에 적용되는 관세율

자료원 : WTO

- GSP제도는 개도국의 교역촉진에 많은 기여를 해 왔으나, 그 효과는 일부 품목에 한정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부에서 제기
 - GSP 특혜관세를 위한 까다롭고 엄격한 원산지규정, 기술인증 등이 적용 → 비관세장벽으로 작용
 - 공여국으로의 수출에 성과가 나타나는 즉시 GSP에서 “졸업”해야 하는 원칙으로 인해, 개도국의 수출촉진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지 못함.
 - 수혜국들의 對공여국 수출이 지속 증가해 왔으나, 이는 무역창출 효과 보다는 무역전환효과에 의한 것으로 분석 (WTO, 2004)
- 지속적인 관세인하 협상의 결과로 MFN 관세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일부 민감품목을 제외한 분야에서는 GSP 특혜관세의 의미 축소
 -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S&D) 이슈가 WTO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공식 제기되고 있음.
 - GSP 등 일방적 특혜제도에서 벗어나 다자간 무역체제에서 개도국의 교역촉진을 위한 기술적 지원, 능력배양 프로그램 등이 다양하게 도입됨으로써 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제도는 축소 추세

2. 농산물 시장개방

□ 농업은 개도국 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

○ 개도국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

- GDP의 약 25%, 총 고용의 50%

○ OECD 국가의 경우, 농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 총 고용의 7%

□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에도 농업 분야에 대한 보호주의는 매우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음.

○ Quad 국가의 농산물에 대한 수입관세는 비농산물 MFN 관세율에 비해 평균 4배 높은 수준

○ OECD 국가의 1일 평균 농업보조금은 10억달러 이상

- 선진국의 대개도국 개발지원금의 6배 규모

- 농업분야 총보조금 : 3천1백80억달러 (2002)

· 미국, EU, 일본 등 3개국의 총 농업보조금이 전체의 4/5 차지

- 1 농가당 보조금 수혜금액이 높은 국가는 스위스, 노르웨이, 한국, 아이스랜드, 일본 순임.

· 총 GDP 중 농업 비중이 2% 이상 국가에 속함.

○ 이들 선진국들의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은 전 세계 농산물 교역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 왔음.

- 수출보조금 → 농산물 수출가격 인하 → 개도국의 농산물 수출에 타격 → 전 세계 사회경제적 분야에 직간접적 영향

□ World Bank와 IMF는 교역왜곡 효과를 초래하는 농업보조금 및 관세 보호조치가 철폐될 경우, 세계 경제후생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

○ 농업보조 및 관세 보호조치 철폐 후 세계 경제후생은 3천5백억 달러 만큼 개선 (World Bank)

○ 농업 분야에 대한 보호조치가 철폐되면 세계 복리후생이 명목적으로 연간 1천2백80억달러 개선될 것이며, 실질적으로는 이 보다 약 7배 이상 개선되는 효과 (IMF)

- 선진국의 혜택 98억달러

- 개도국의 혜택 30억달러

· 국내보조 삭감에 비해 관세인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

□ WTO 체제 이후 농업보조금 감축 노력 지속

○ OECD 국가의 총 농업보조금

: GDP의 2.3%(1986~88) → 1.2%(2002)

○ OECD 국가의 농산물 세계 시장가격 대비 국내가격 비율 (생산자 가격 기준)

: 세계 시장가격의 157%(1980년대) → 131% (2002)

<표 7> 국별 PSE²⁾ (2002)

(단위 : %)

일본	EU	캐나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59	36	20	18	5	1

자료원 : WTO

- 정부에 의한 보조금 형태가 많은 OECD 국가에 비해 개도국은 농산물에 대한 고관세 정책으로 자국 산업보호

- 인도 등은 비료, 에너지, 수자원 등에 있어 많은 보조금 투입

- 농업 분야의 보조금은 이른바 “비교역적 관심사항(NTCs; Non-trade Concerns)”에 의해 합리화되기도 함.

- 농업보호는 농가 수입 안정화, 환경보호, 전통적 가치 보존, 식량 안전 등 교역 이외의 사회적 이슈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주장

- 농업보호정책이 이들 비교역적 관심사항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증거는 제시되지 않은 상태

2) Producer Support Estimate; 농가 수익 중 보조금 비중

3. 섬유교역자유화

- WTO의 예외없는 관세화 원칙 밖에서 운영되던 섬유의류 제품의 교역규범이 2005.1.1일부로 GATT 체제로 복귀
 - 1974년 다자간섬유협정(MFA)을 통해 이루어진 섬유 교역 수량규제 체제가 30년 만에 폐지되고, WTO의 상품교역 규정으로 흡수
 - 국별 수량규제에 묶여 있던 섬유교역이 완전 자유화

- 섬유 수입쿼터 해제 이후 세계 섬유시장에서의 중국의 독주 예상
 - 저렴한 인건비, 높은 생산성, 수준 높은 교통 인프라 등이 유리하게 작용

- WTO 섬유협정(ATC)에 따라 3단계로 나뉘어 진행된 섬유교역자유화는 일단 2005.1.1일부로 모든 회원국에서의 섬유 수입쿼터가 폐지됨에 따라 성공적인 이행으로 평가
 - 그러나 수량규제 외에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다양한 수입규제조치가 도입되기 시작
 -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협상 시, 미국은 중국산 섬유류에 대해 2005~2008년간 특별세이프가드를 도입할 수 있다고 합의
 - 섬유 수입쿼터 해제 이후, 미국 시장 내 중국산 섬유의류 제품 시장점유율이 급증하자 미국 섬유업계의 대중국 세이프가드 조치 도입 청원 급증

- 2004.10월 중국산 양말류에 대한 세이프가드(수량규제) 도입 이후, 2005.5월 두 차례에 걸쳐 중국산 의류 7개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 전격 도입

<표 8> 미국의 대중국 섬유류 제품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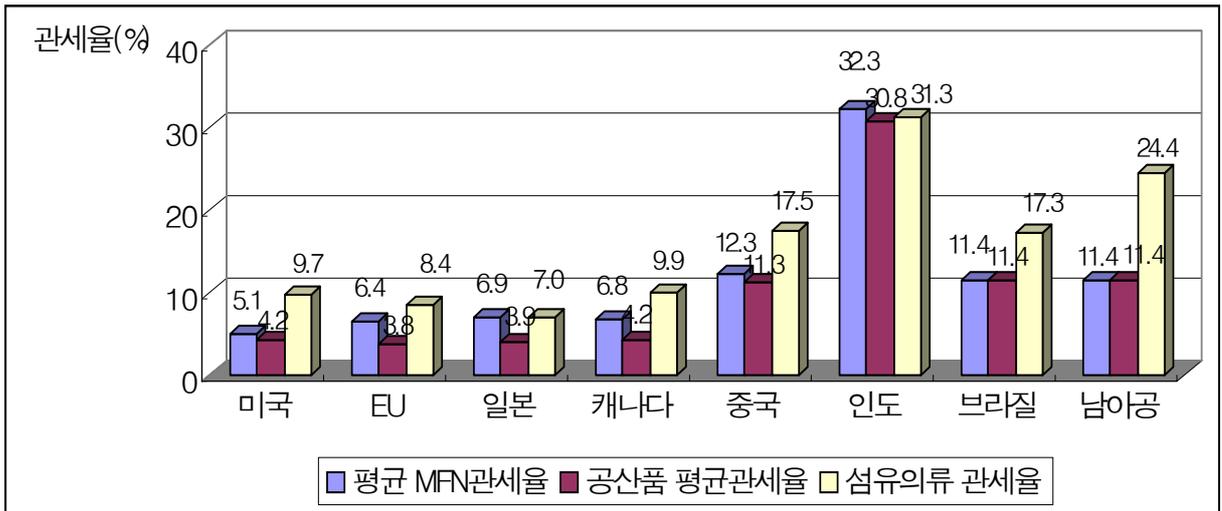
카테고리	품목명	발동일	쿼터부여시점	쿼터량
332	면양말	2004.10.22	2004.10.29 ~2005.10.28	양말류 전체 42,433,990 pairs
432	울양말			
632	인조사양말			
338/339	니트셔츠와 블라우스	2005.5.13	2005.5.23~12.31	4,074,115 dozen
347/348	면바지			4,340,638 dozen
352/652	면 및 인조사 내의류			5,062,892 dozen
647/648	인조사 바지	2005.5.18	2005.5.27~12.31	2,586,771 dozen
638/639	인조사 니트셔츠 및 블라우스			2,765,373 dozen
301	면 원사			1,401,478 Kg
340/640	남성/남아용 면 및 인조사 Woven 셔츠			2,151,651 dozen

자료원 : 미 상무부

- 섬유류제품에 대한 수량규제는 해제되었으나, 여러 국가들이 동 제품에 대해 까다로운 원산지 규정, 고관세 등을 운영하며 자국으로의 수입장벽을 낮추지 않은 상태
- 일본을 제외한 Quad 국가(미국, EU, 캐나다) 역시 타 공산품에 비해 섬유류제품에 대해 높은 수입관세 책정
- NAFTA 원산지규정 등은 섬유류 제품의 원산지 식별을 위해

- 매우 엄격하고 까다로운 원산지 규정 운영
- 봉제기준 원산지 규정, 자국산 부품비율(local contents 등)

<그림 4> 주요국의 평균관세율³⁾과 섬유의류제품 관세율 비교 (2002)



자료원 : WTO

-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주요 섬유수출국들도 섬유의류 제품에 대해 높은 수준의 수입관세율 적용

<표 9> 주요 섬유수출국의 섬유의류 제품 수입관세율

(단위 : %)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태국	멕시코
31.5	26.4	24.7	24.0

자료원 : WTO

- 섬유의류제품에 적용되는 고관세를 일반 공산품 수준으로 맞추는 관세조화에 관한 다자간 합의 필요

3) 실행관세율 기준

4. 비관세장벽 해소

□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WTO 체제에서 관세인하, 수량규제 해제 등에서는 가시적인 성과

○ 관세장벽이 해소되면서 각국은 각종 무역조치 및 기술인증 등을 통한 비관세장벽 강화 추세

○ 비관세장벽의 유형

1) 교역규제 조치 : 반덤핑, 상계조치, 세이프가드 등

2) 기술장벽 : 기술인증, SPS(위생검역조치) 등

□ 교역규제 조치

○ 반덤핑 조치는 2001년 조치 도입 건수가 가장 많았고, 이후 2002년과 2003년에는 줄어드는 경향

- 반덤핑 조치는 불공정 교역을 해소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덤핑마진을 가산하는 제도이나, 자국 내 수입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남용되어 왔음.

- WTO 출범 이후 2002년까지 총 39건의 분쟁이 반덤핑 조치의 남용과 부적절한 규범 적용이 원인으로 발생

- 1995~2003년 간 총 2,416건의 반덤핑 조사가 개시

· 품목별로는 화학과 철강이 총 반덤핑 조사 대상의 50% 이상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철강은 31%로 반

덤핑 최대 조사대상 품목

- 최근에는 개도국의 반덤핑 조치 도입 증가
 - 인도는 2003년 최다 반덤핑 조사 개시국이며, WTO 출범 이후 조사개시된 반덤핑 조치의 15.7%가 인도에 의해 이루어졌음.
(미국 13.6%, EU 11.3%, 아르헨티나 7.5%)
- 반덤핑 조사 개시 건수의 약 50%는 조치 도입 없이 조사 종결
- 2003년 반덤핑 조치 최다 제소국 : 인도, 중국, 터키, 태국 순
최다 피소국 : 중국, 한국

<표 10> 반덤핑 조치 최다 제소국 (2003년 말 누적 기준)

(단위 : 건)

인도	미국	EU	아르헨티나
273	205	187	138

자료원 : WTO

- WTO 출범 이후 상계조치는 총 161건 도입 (2003.6월 기준)
 - 최다 도입국 : 미국 (65건)
- 세이프가드 조치 도입은 1999년 6건, 2001년 13건, 2002년 14건, 2002/03(10월~10월) 20건으로 2000년대 들어 급증 추세

기술장벽

- 보건, 안전, 위생 등의 이유로 도입된 각종 기술규정들이 교역왜

곡 효과 초래

- 특히 기술수준이 낮은 개도국이나 최빈개도국의 경우, 선진국이 요구하는 기술인증과 위생검역 규정은 매우 높은 무역장벽이 되고 있음.
- 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각 국이 운영하는 국내 기술기준, 환경기준 등을 국제표준에 맞게 조화시키는 작업 진행 중

<표 11> 국별 국내 기술기준의 국제표준과의 조화 비율

EU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멕시코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40~80%	90%	80%	33%	42%	60%	50%이상	80%

자료원 : WTO TPR 보고서

- DDA 협상에서 기술지원, 능력배양 등 대개도국 지원문제가 별도로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음.
- 환경기준, 기술표준 등 국제규범이 존재하는 분야에서는 각국의 국내 법규를 국제기준에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
 - FAO, WHO, World Bank 등이 WTO와 함께 개도국의 기술지원과 능력배양 프로그램에 참여
- 동 작업에 필요한 대개도국 지원사항에 대한 논의 중
- 단, 국제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분야에서는 각국간 표준에 대한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5. 서비스시장 개방

- 서비스 분야는 전 세계 GDP의 60%를 차지하는 주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성”과 “사회성”의 성격으로 인해 다자간 교역 자유화 협상에서 제외되어 왔음.
- 과거에는 서비스 시장이 개방되면, 외국자본에 의해 자국의 기본적인 인프라(의료, 교육, 에너지 등)가 통제되어 자국 내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편견이 지배
- 그러나 최근에 이루어진 일부 서비스 시장 개방의 효과는 이같은 우려를 말끔히 불식시키고 있음.
- WTO 서비스협정(GATS)은 서비스 분야의 특성을 고려, 점진적인 시장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양허 스케줄에 의한 자발적 시장개방이 원칙
- ‘구체적 약속(specific commitments)’에 의해 최소시장접근 조건 제시 가능
 - 최소시장접근 조건 및 내국민 대우는 차별적 적용 가능
 - MFN 대우는 무차별 적용
 - 양허안 수정 및 철회는 관련국의 동의 하에서만 가능
- 금융, 통신, 교통, 기업활동 등의 분야에서 가장 많은 시장개방이 이루어진 반면, 의료 및 교육 분야는 시장개방이 가장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

○ 의료, 교육, 에너지 등 분야에 대해서도 정부 독점공급체제에 대한 비효율성과 더불어 시장개방 압력 증가

- 민영화에 따르는 공급의 효율성과 가격안정, 서비스 질 개선 등 부각

□ DDA 서비스협상은 request/offer 방식으로 진행

○ 12개 분야 155개 세부업종을 대상으로 각국간 요청서(request)와 양허안(offer) 교환을 통한 협상 진행

○ 2002.6월부터 각국은 1차 양허안을 제출하기 시작했으나, 제출국 수가 적고 양허안의 질적 수준이 협상을 본격적으로 진전시키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

○ 서비스 협상은 UR 이후, 농업과 함께 기설정외제로서 협상이 재개되었으나, 다른 분야에 비해 협상의 실질적 진전이 거의 없음.

- DDA 협상의 불균형이 예상되며, 실질적인 협상 진전을 위한 각국의 양허안 제출이 중요되는 상태임.

6. 개도국 참여 확대

□ 1990년 이후 세계 수출시장에서의 개도국 비중 확대

<표 12> 권역별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추이 (상품교역, 1990~2000)

	1990	1995	2000
세계 전체	100.0	100.0	100.0
북미	26.2	24.8	29.6
아시아 개도국	18.4	27.4	26.4
서유럽	25.8	20.3	18.8
일본	13.2	12.2	10.9
중남미	4.2	5.4	5.2
중동아프리카	5.2	5.4	4.9
체제전환국가	2.9	1.3	1.0

자료원 : WTO

○ 1995~2000년 간 아시아개도국 및 중남미 국가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하락한 이유는 역내교역이 심화되었기 때문

- 이 기간 동안 아시아 개도국간 역내 교역은 전체 교역의 38%로 10%포인트 증가

- 중남미 국가 간 역내 교역은 1996년, 아시아 개도국간 역내 교역은 1998~2000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

○ 북미, 일본, 서유럽 시장에서 개도국산 수입시장 점유율 증가

- 개도국 수입시장 내 개도국산 점유율은 평균 50% 상회

□ 90년대 개도국의 수출은 전 세계 평균(6%)을 크게 웃도는 9% 증가 시현

- 2000년 개도국의 전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30%까지 상승
 - 아시아의 중국, 중남미의 멕시코가 가장 큰 역할

□ 다자간 무역체제 하에서 개도국의 수출 증가는 전 세계 교역의 구조를 변화시켰으며, 이들 국가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어 다자간 무역협상에서의 위상 제고로 이어졌음.

- 특히 이들 개도국의 수출은 과거 1차산품 위주로 이루어졌던데 반해, 최근에는 고급기술제품 비중이 급증

<표 13> 주요 지역의 품목단계별 수출증가율 추이 (1980~2000)

	1차산품	원자재	하급기술제품	중급기술제품	상급기술제품
북미	2.2	5.1	8.4	7.0	9.1
중남미	5.1	5.1	11.8	14.8	21.0
서유럽	3.5	4.2	4.8	5.5	9.3
EU(15)	2.9	4.1	4.6	5.5	9.4
체제전환국	15.0	17.3	13.8	12.3	12.8
아프리카	4.2	2.5	7.7	9.0	12.8
중동	-0.2	9.3	13.6	13.9	na
아시아	3.7	6.7	8.3	8.1	15.6
선진국	3.2	4.5	5.1	5.9	9.5
개도국	2.4	6.3	10.4	13.7	19.8
아시아개도국	3.2	7.3	10.2	13.6	19.6
NICs(6)	3.2	7.1	6.7	12.1	18.2
세계 전체	3.2	5.2	6.7	6.8	11.3

자료원 : WTO

<표 14> 주요 지역의 품목단계별 수입증가율 추이 (1980~2000)

	1차산품	원자재	하급기술제품	중급기술제품	상급기술제품
북미	3.0	6.5	10.2	9.1	13.7
중남미	10.5	12.4	16.0	13.3	17.7
서유럽	1.0	3.6	5.3	6.4	9.6
EU(15)	0.8	3.5	5.2	6.3	9.6
체제전환국	8.3	12.4	16.0	12.6	18.1
아프리카	4.1	2.5	2.8	1.6	5.4
중동	6.2	6.1	2.3	4.2	8.1
아시아	3.8	6.0	11.0	9.6	15.9
선진국	1.6	4.3	7.0	7.3	11.1
개도국	6.7	7.9	10.1	9.0	15.6
아시아개도국	6.5	8.1	11.5	10.2	17.1
NICs(6)	6.1	7.8	11.4	9.7	16.7
세계 전체	2.7	5.1	7.7	7.9	12.3

자료원 : WTO

□ DDA 협상에서는 WTO 출범 이후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되어 온 개도국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 마련 중

○ 2004.7월 마련된 협상틀(July Package)에서도 “개도국 우대(S&D)”를 협상의 주요 의제로 선정

- 개도국 특별대우(S&D) 이행결과를 2005.5월까지 무역협상위원회 및 일반이사회에 보고, 2005.7월까지 일반이사회 검토 완료토록 권고

Ⅲ. 우리나라와 WTO

- 우리나라는 1967년 GATT에 가입하여, WTO에는 1995.1.1. 원회원국으로 가입

- 우리나라의 WTO 가입배경
 - WTO는 회원국의 국내법을 다자규범에 일치시키도록 규정하는 등 일방주의 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미국, EC 등 일부 선진국의우리나라에 대한 일방적인 무역보복 가능성이 감소

 - 분쟁해결기구를 포함한 항구적이고 강력한 세계무역기구가 설립됨으로써EC, NAFTA, AFTA 등 폐쇄적인 지역경제블록의 증가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됨.

 - 국내 각종 무역관련조치에 대한 무역상대국의 WTO 제소 가능성에 대비, 기존의 각종 국내규정 및 새로운 규정에 대한 종합적 검토 및 국내의 비합리적인 제도·관행의 개선을 통해 우리나라의 세계화·개방화 정책 추진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

 - WTO 협정의 국내이행을 위해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 (WTO 이행법)을 제정(1995.1)하고, 대외무역법, 관세법 등 다수법령을 개정

- 우리나라는 WTO의 다자간 무역체제에서 관세율 인하를 통한 시장접근, 쌀 협상을 통한 농산물 시장개방, 서비스시장 개방 등 일련의 교역자유화에 적극 동참

- 우리나라의 수출규모가 확대되면서 세계 각국으로부터 반덤핑 조치 등에 피소당하는 사례 증가
 - WTO의 반덤핑 조치는 국내가격보다 낮은 수준의 수출가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공정무역에 대해 적용 가능
- WTO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1995.1.1~2004.6.30 기간 동안 한국 제품에 대해 총 194건의 반덤핑 조사가 개시되어 중국(386건) 이후 최다 조사개시 건수 기록
 - 이는 우리나라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특히 90년대 후반 외환 위기에 따른 환율인상으로 수출가격경쟁력이 상승한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

<표 15> 5대 반덤핑 피소4)국 현황

국 명	중 국	한 국	미 국	대 만	일 본
조사개시 된 건수	386	194	146	138	113

자료원 : WTO

- 우리나라는 각 국의 반덤핑 조치 남용을 근본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DDA 협상에 적극 참여, 현행 반덤핑 협정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경주
 - 현행 반덤핑 규정이 자의적으로 해석 가능하고 수출자에게 불리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

4) “피소”는 “제소가 된”의 뜻이 아닌 “조사개시 된”의 의미로 사용. 제소가 되었을지라도, 반덤핑 절차 실무를 담당하는 조사당국이 근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제소를 기각할 경우 실제 조사가 개시되지 않아, WTO 반덤핑 위원회에 통보할 의무가 없음.

- 일본, 대만 등 반덤핑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 국가와 반덤핑 프레임즈를 형성하여 공동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DDA 협상을 적극적으로 주도

□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는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되었던 1, 2차 조선분쟁과 반도체 분쟁에서 승소함으로써 다자간 무역체제를 효과적으로 활용

1) 1차 조선분쟁

- 2002.10월 EU는 한국 조선업계가 정부 보조금을 받았다고 WTO에 제소
- 2004.12월 한국 승소 (WTO는 기업구조조정자금이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

2) D램 상계관세

- 2003.6월 미국은 하이닉스 D램에 대해 상계관세 부과 하이닉스가 미국을 WTO에 제소
- 2004.11월 미국의 상계관세 부과는 WTO의 보조금금지규정 위반으로 잠정 판결 (WTO는 하이닉스가 받은 구조조정자금은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미국이 부과한 상계관세는 부당하다고 판결)

3) 2차 조선분쟁

- 2003.9월 한국은 EU 조선업계가 EU로부터 부당한 보조금 받고 있다고 제소
- 2004.12월 한국 잠정 승소 (한국의 조선업계가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가정 하에 EU가 자국 조선업계에 지급한 잠정보조금은 WTO의 분쟁해결절차에 위배된다고 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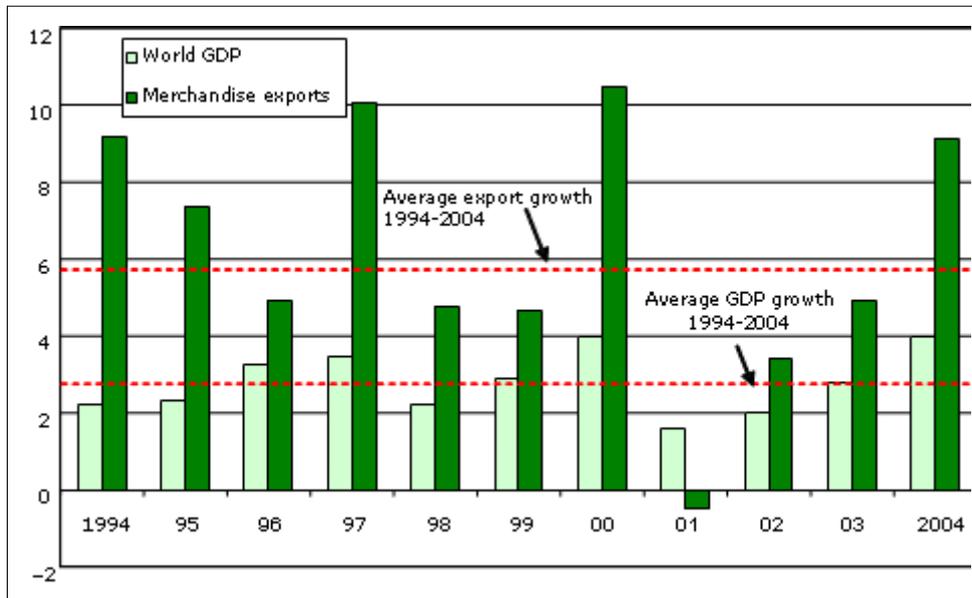
- D램 상계관세 분쟁과 2차 조선분쟁은 우리나라가 제소한 분쟁사례에서 승소한 것으로, 향후 우리나라가 미국과 EU 등 교역대국과의 통상분쟁에서 자신감을 획득하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
- 특히 D램 상계관세 분쟁 승소 사례는 동일한 품목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EU 및 일본과의 통상협상에서도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
- 우리나라는 2005년 말까지 진행될 DDA 협상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며, 우리나라의 교역확대를 위한 통상환경 조성에 노력
 - DDA 협상을 우리 경제의 고도화를 위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산업 경쟁력 제고방안과 연계하여 협상대책 수립
 - 우리가 경쟁력을 갖춘 분야를 중심으로 과감한 시장개방 유도
 - IT, 전자, 자동차 등 분야별 무세화 협상 주도
 - 비농산물 분야(공산품, 수산물, 임산물)의 비관세장벽 해소 주도
-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협상안의 도출
 - 대국민 홍보, 업종별 대책회의 및 전략수립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실질적 이득을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제시
- 다자간 무역체제의 적극적 동참을 통해 세계 교역환경에서의 우리나라 위상 제고

IV. 전망

□ 다자간 무역체제의 정착은 세계 교역확대에 많은 기여

- 아시아 외환위기 여파와 미국 등 세계 경기의 후퇴가 이어졌던 2001년을 제외하면, 지난 10년 간 세계 교역성장률은 세계 GDP 성장률 보다 높은 수준 지속

<그림 5> 세계 GDP 및 교역증가율 추이



자료원 : WTO

- 2004년 세계 상품수출 규모는 8조8천8백억불로 전년 대비 21% 증가하였으며, 수입 역시 21% 늘어난 9조2천1백50억불 기록

<표 16> 세계 수출입규모 추이 (2001~2004)

(단위 : 십억불, %)

	2004	증가율			
	금액	2001	2002	2003	2004
수출	8,880	-4	5	17	21
수입	9,215	-4	4	16	21

자료원 : WTO

□ DDA 협상 등 WTO의 다자간 무역협상 결과, 2015년까지 전 세계 총 소득이 연간 5천억달러 증가 전망 (World Bank)

○ 연간 1억4천4백만명의 빈곤 생활자 구제

□ 분야별로 다자간 무역협상의 진척 정도가 다르게 나타남.

○ 전자 등 일부 공산품 분야에서는 분야별 무세화 논의가 제기될 정도로 교역자유화 환경이 조성

○ 반면, 농업, 경쟁, 투자 분야 협상은 회원국간 이견이 많은 분야
- 농업 분야는 선진국들조차도 과감한 시장개방에 난색
- 경쟁 및 투자 분야는 일부 개도국이 협상의제로 삼는 단계에서 강력 반발

○ 칸쿤 각료회의에서 나타났듯이 다자간 무역체제에 대한 불신감도 일부 회원국을 중심으로 나타나기 시작

□ 그러나 WTO를 중심으로 이어지는 다자간 무역체제는 세계 교역을 증진하고, 그로 인한 세계 국민들의 후생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음.

○ 회원국들간 대두되는 이견은 다자간 무역체제의 합의제도와 분쟁 해결제도에 의해 합리적으로 조정되는 추세

○ 향후 WTO의 다자간 무역체제는 148개 회원국의 공동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해 끊임없는 변화와 의무를 다할 전망

<참고문헌>

KOTRA (2005), WTO 설립 이후 10년간 대한 반덤핑 조사개시 현황 분석, 서울

외교통상부 (2001), WTO 개황, 서울

외교통상부 도하개발아젠다 홈페이지 (www.wtodda.net)

J.Crawford and R.Fiorentino, The Changing Landscape of Regional Trade Agreements, WTO, Geneva, Switzerland

M.Bacchetta and B.Bora (2003), Industrial Tariff Liberalization and the Doha Development Agenda, WTO, Geneva, Switzerland

M.Janson (2004), Income volatility in small and developing economies: export concentration matters, WTO, Geneva, Switzerland

P.Sutherland etc (2004), The Future of the WTO, WTO, Geneva, Switzerland

R.Acharya and M.Daly (2004), Selected Issues Concerning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Discussion Paper No 7, WTO, Geneva, Switzerland

WTO Homepage (www.wto.org)